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근거 신설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33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5. 30.

다. 회 부 일: 2024. 6. 1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용역계약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2. 검토의견

표준계약서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는 '표준계약양식'으로, 현행법 제8조 및 제9조[1]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이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②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③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④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등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음.

그러나 2023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0% 이상인데 반해, 소속 연습생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40.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의 표준부속합의서 사용률은 46.8%로 저조함.

---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

(단위: %)

계약 종류	표준계약서 사용	자체계약서 사용	구두 계약	사용하지 않음
대중문화예술인	90.8	6.6	0.6	1.9
소속 연습생	40.3	3.9	0.5	55.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46.8	3.9	0.5	48.9

주)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이 있는 기획업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자료: 2023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신설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2]에 따라 지원을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문화산업에 투자한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투자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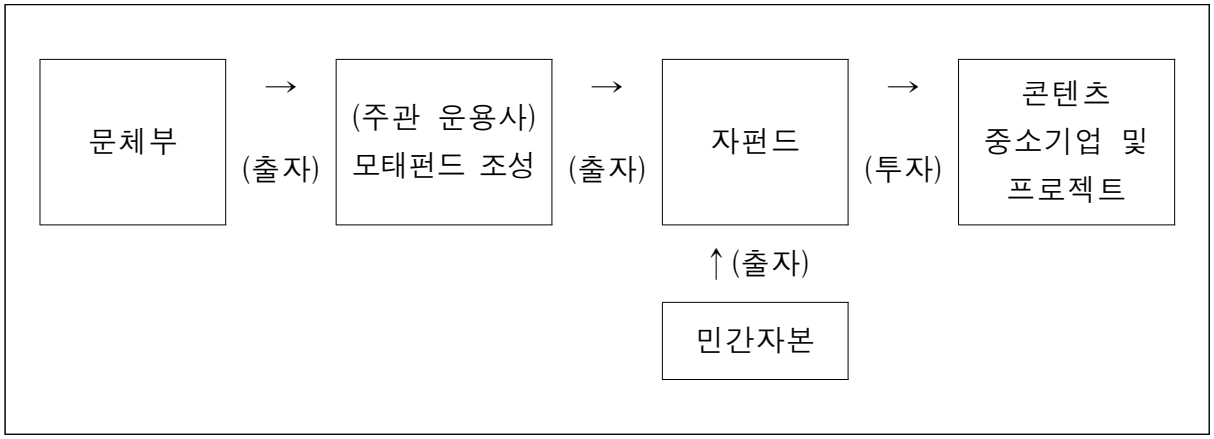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근거와 재정지원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나,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에 따른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는 행위 주체가 민간이므로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재정 지원 우대 조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